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7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2. 2. 2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 )

가.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존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으로 제명 개정
- 영등포구청 위치인 당산동3가 385-1번지를 당산로 123으로 일부개정 (안 제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띄어쓰기를 함.
  - 안 제2조에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-1번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”으로 변경함.
  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.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일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하여 공간표시를 통일화·선진화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이에 맞게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존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으로 제명 개정

나. 영등포구청 위치인 당산동3가 385-1번지를 당산로 123으로 일부개정  
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명주소법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2.1.26 ~ 2.2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 없음

붙 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”으로, “당산동3가 385-1번지”를 “당산로 123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 한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 제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 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b>제2조(위치)</b> 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</u>은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<u>당산동3가 385-1번지</u>에 둔다.</p>	<p>제명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</u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6조제1 <u>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</u>----- -----.</p> <p><b>제2조(위치)</b>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</u>----- ----- <u>당산로 123</u>--- -----.</p>